

『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3일

나. 발 의 자 : 김영길, 강승수, 양진오, 윤종호, 이지연,
장미경 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3월 16일

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영 길 의원

나. 제안이유

올바른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,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, 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○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(안 제3조, 제4조)

-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(안 제5조, 제6조)
- 식생활교육의 평가(안 제7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1조)
-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(안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4. ~ 3. 11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「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」 은,

-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상위법인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에 의거하여 시민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서구화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